- (5) 고소작업대 작업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장내 적정 조도(75Lux이상)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6) 조작스위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조작 방지용 안전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(7) 작업대 모든 측면에는 물체나 사람이 낙하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난간 등의 설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8) 충전전로의 인근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2조(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·기계장치 작업) 규정에 따라 고소작업대를 충전전로의 충전부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6.3 작업 중 안전수칙

- (1) 근로자가 임의로 안전장치를 제거하거나 기능 해제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(2) 작업대 위에서 작업 중에 근로자는 안전모,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며, 안전대 부착 설비는 작업대 이외의 곳에 설치하여야 하다.



<그림 8> 안전대 착용의 설치 사례

- (3) 고소작업대의 계획된 작업반경 및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4) 연약지반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할 때는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침하